

韓-中 FTA 推進 時 技術障壁 部門의 協商戰略에 관한 研究*

金誠恂** · 金仁芝***

Ⅰ 요약

본 연구는 현재 추진중인 한·중 양국의 FTA 체결에 대비하기 위한 협상전략을 기술장벽 분야에서 모색하였다. 한국 및 중국의 기술장벽의 현황 및 양국 기체결 된 FTA TBT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중 FTA 체결시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WTO/TBT 통보를 많이 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 수단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불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WTO의 관련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항이나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상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모든 FTA에 무역상 기술장벽 조항을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외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중 FTA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농산품에 대해서 민감 항목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관세율이 대폭 떨어지게 되면 중국산에 대한 기술표준, 기술규정 그리고 적합성평가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쌍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는 기업의 수출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한중양국의 FTA 협정 중 TBT의 투명성부분에 살펴보면 투명성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위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일용화학제품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표준, 규정 그리고 중국 수입품 추출 검사의 표본 비율을 향상시키도록 대응

* 본 논문은 김인지(2012)의 석사논문에서 발췌하고 수정, 보완한 것임.

** 檀國大學校 貿易學科 教授, 제1저자. sskim@dankook.ac.kr.

*** 檀國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碩士卒業, 교신저자. jinrenzhiv@hotmail.com.

〈논문 투고일〉 2012-07-20

〈논문 수정일〉 2012-08-17

〈게재 확정일〉 2012-09-05

하여야 한다.

둘째, 지금 검토 중인 한-중 상호인증을 대비하기위한 양국의 시험·인증기관 인력의 교육 및 양성, 협력 촉진도 필요하다.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기술표준 철회,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산제품인증제도 단일화 혹은 인증 항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투명성의 개선하기 위해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규제에 대한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 상대국에 산업별로 충분한 적응기간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 FTA, 기술장벽, 한국, 중국

I. 序 論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적으로 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사실상 세계무역 대부분이 지역경제 내에서 발생한다. 특히 한국과 중국처럼 수출을 위주로 하고 무역이 국내경제 성장에 대해서 영향력이 매우 큰 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시장의 무역액 증가, 또는 무역경쟁에 대응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을 통해서 지역경제 통합화를 추진해야한다.

한·중 수교 후 양국정부는 여러 영역에서의 상호의존 관계가 급속히 강화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로,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했다.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rea)과 같은 제도적 통합 장치가 필요하다. FTA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중의 특정제도(WTO Plus)라고도 부른다. FTA가 세계자유무역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WTO제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FTA는 다양한 무역제도에 따른 뿐만 아니라 협정 반대 국가 간에 자유무역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전체에 의미가 있다 하겠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최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수요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그로 인해 점차 늘고 있는 무역수지 불균형과 직접투자관련 마찰 등도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FTA도 긍정적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 FTA를 체결한 나라사이의 무역자유화가 경제력이 약한 국내생산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개도국이지만 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다른 단계라서 FTA에 체결에 특히 한국경제에 대해서 충격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한 MADE IN CHINA의 제조업과 농산품이 한국

의 중소기업과 농업에 대해서 충격이 클 것이며, 국내 실업율도 증가한다. 한-미 FTA의 체결 및 실행과정의 어려움을 보면, 국내사회에 대한 충격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크게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중국은 그동안 자국의 경제개발과 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 비관세장벽을 행사해왔다. 다자간 FTA에 기초한 WTO 체제가 강화되고 양자 간 혹은 지역 간 FTA가 광범위하게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 수량규제 또는 수출자유규제 등과 같은 보호무역수단의 이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로 인해 각국은 자국의 수입 경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은밀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들의 경우 법률상 해석과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술규제가 점차 강제성 법규위주로 발전하고, 그 영향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WTO 규범인 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규제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제품의 안전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소비자 권익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규제를 통해 제품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고 소비자들의 기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통상적으로 수입국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회원국 간 동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규제채택이 남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과 FTA를 체결한 미국, EU 등의 선진국들은 소비자 권익 혹은 환경 보호라는 이유로 갈수록 TBT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TBT가 일반적으로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형식과 절차로 그 수준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TBT는 신기술 및 일부 첨단제품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교역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로 그 적용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TBT 통보문을 살펴보면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법률적 상황을 고려하여 WTO협정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기술장벽부문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최대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 시 기술장벽 분야가 협상에서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또한 국내 산업에 끼치는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방안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강력하고 복잡한 무역상 기술장벽을 운용하고 있고 FTA 협상 시 TBT가 농수산물 협상 못지않은 민감한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한중 양국의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연구와 기술장벽의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가 많으나 FTA 기술 장벽규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 전자전 기제품, 기계류, 화학공업제품 등 대중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품목의 대부분이 무역상 기술 장벽의 규제대상이다. 특히 양국 간 FTA상의 기술 장벽부문의 협상을 통해서 한중 FTA 체결에 한국 제조업과 농산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한·중 양국의 기술규제의 동향과 지금까지 체결된 FTA에서 나타난 기술 장벽규정을 비교분석하고, 향후 추진될 한중 FTA 기술장벽 부문의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의 검토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현재까지 기술장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각 업계별 기술장벽이 발생한 원인 기술규제가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기술장벽과 FTA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즉, 무역에 대한 기술규제의 효과가 국가별 특성, 산업별 특성, 기업별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章志健(2009)¹⁾의 연구는 무역상 기술장벽의 발생원인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장벽의 차이점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기술장벽이 중국대외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禹佳(2008)²⁾, 盛国勇(2009)³⁾, 龚丹峰(2009)⁴⁾의 연구는 중국의 주요 서비스무역, 농산품 수출, 동력전기제품수출 대상국의 기술장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자국의 경제 효과를 분석했고 중국의 서비스무역, 농산품, 그리고 동력전기제품의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1) 章志健. 2009. 技术性贸易壁垒对国际贸易的影响理论与实证研究. 박사학위논문. 武汉理工大学 산업경제학학과.

2) 禹佳. 2008. 技术性贸易壁垒对中国服务贸易的影响和对策研究. 석사학위논문. 西北大学. 세계경제학학과.

3) 盛国勇. 2009. 技术性贸易壁垒对中国农产品出口贸易的影响及对策分析. 석사학위논문. 华中农业大学. 국제무역학과.

4) 龚丹峰. 2009. 技术性贸易壁垒对我国机电产品出口影响及应对研究. 석사학위논문. 复旦大学. 구역경제학학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술규제의 세부항목인 표준, 적합성평가, 기술규정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한승준 외(2010)⁵⁾은 표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표준 및 인증이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표준 제정절차의 개선, 인증의 모듈화를 통한 인증제도의 개선, 기술표준의 민간 이양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장용준 외(2011)⁶⁾와 성백용 외(2011)⁷⁾의 연구들에서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의 무역상 기술장벽의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 무역에 있어 기술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태정 외(2010)⁸⁾,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FTA TBT 협정 관련 동향과 TBT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그리고 WTO 및 FTA 환경변화 속에서 TBT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WTO 및 주요 FTA 사례에서 TBT 관련 규정과 협상 동향과 주요 특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한-미 FTA와 더불어 국내 산업 및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경우를 대상으로 기술규제 관점에서 TBT가 국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앞서 수행한 다양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FTA TBT 협상에 관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한-중 양국이 체결한 FTA의 TBT 협정 비교분석

1. 한국이 체결한 FTA의 TBT 협정

〈표 1〉과 같이 한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그리고 최근 미국과 FTA가 발효 중이며,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등과도 FTA 협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에도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 TBT협상이 이미 완료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호 무역의존도와 경제적

5) 한승준 외. 2009. 무역 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장용준 외. 2011.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성백용, 송승이. 2011. 최근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8) 하태정 외.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호의 존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간 FTA의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한-중-일 FTA에 대한 3국간 공동 연구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MERCOSUR TA,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한-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FTA도 공동 연구 또는 여건을 조성 중에 있다. 이로서 한국의 자유무역대상국이 60개 이상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세계 톱3 경제 주체와도 FTA를 체결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다. 한국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무역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제일 적극적인 나라가 되었다.

〈표 1〉 한국의 FTA 체결현황 요약

체결 완료	협상 중	협상 고려 중
- 한국·칠레	- 한국·캐나다	- 일본
- 한국·싱가포르	- 한국·멕시코	- 중국
- 한국·EFTA	- 한국·GCC	- 한·중·일
- 한국·ASEAN	- 한국·호주	- MERCOSUR
- 한국·인도	- 한국·뉴질랜드	- 러시아
- 한국·EU		- 이스라엘
- 한국·페루		- SACU
- 한국·미국		- 베트남
- 한국·터키		- 한·중·미
- 한국·콜롬비아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 「우리나라 FTA 추진체계」, (<http://www.ftahub.go.kr>)

2. 중국이 체결한 FTA TBT협정

〈표 2〉와 같이 중국은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현재 CEPA(홍콩, 마카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 ASIA-PACIFIC(대만), 그리고 코스타리카와 FTA가 발효 중이며, GCC(걸프만 협력회의), 호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SACU(남 아프리카세 동맹), 스위스 등과도 FTA 협상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상호 무역의존도와 경제적 상호의 존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RTA(인도), 한국, 한·중·일 FTA에 대한 공동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FTA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FTA 추진 초기 중국은 아태지역 국가와 주로 FTA를 체결했으나 전 세계적으로 FTA가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 전 지역에 걸쳐 경제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중이다. FTA에 뒤늦게 참여한 중국은 '경제대국은 핵심 이웃국가 가장 중요, 개발도상국은 기반'이라는 지역 협력전략 하에 이웃국가와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WTO 가입 후 31개 국가(지역)와 15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했고, 8개의 FTA를 체결할 정도로 FTA는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운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표 2〉 중국의 주요 FTA 체결현황 요약

체결 완료	협상 중	협상 고려 중
- 중국·CEPA	- 중국·GCC	- 중국·인도
- 중국·아세안	- 중국·호주	- 중국·한국
- 중국·파키스탄	- 중국·아이슬란드	- 중국·한국·일본
- 중국·칠레	- 중국·노르웨이	
- 중국·뉴질랜드	- 중국·SACU	
- 중국·싱가포르		
- 중국·페루		
- 중국·ASIA-PACIFIC		
- 중국·코스타리카		

자료 :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http://fta.mofcom.gov.cn>).

3. 한-중 양국의 기 체결된 FTA의 TBT 비교분석

〈표 1〉과 〈표 2〉에서 한-중 양국 각 기 체결 FTA TBT 협정문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의 기 체결된 FTA의 TBT협정 주요내용

FTA	기술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기타내용
한-칠레	WTO/TBT 일치	WTO/TBT 일치	WTO/TBT 일치	1. 양립성 강조 2. TBT위원회 개최 3. 기술지원

FTA	기술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기타내용
한-싱가포르	1. WTO/TBT 일치 2. 국제표준 사용강조	WTO/TBT 일치	1. 적합성평가 기관의 상호 인정 2. 전기전자분야 MRA 이행	1. 비밀유지와 규제 권한의 보유 강조 2. TBT공통위원회 3. TBT분쟁해결 메커니즘
한-아세안	WTO/TBT 일치	WTO/TBT 일치	WTO/TBT 일치	1. 기술표준 교육 프로그램 진행 2. TBT위원회 개최
한-인도	WTO/TBT 일치	WTO/TBT 일치	전기전자 MRA협상촉진	1. 분쟁해결절차 2. TBT위원회 개최
한-EU	WTO/TBT 일치	1. EU회원국 통일한 기술 규정 적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음 2. 정보제도 목적 외 강제적 라벨요건을 최소화 3. MADE IN EU 사용 불허	전기전자분야 상호인증 SDoC 도입	위원회 대신 조정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페루	WTO/TBT 일치	협력과 동등성장조	WTO/TBT 일치	1. 기술표준원 인력지원 2. 투명성강화 3. 위원회설치
한-미국	WTO/TBT 일치	1. WTO/TBT 일치 2. 자동차와 관련 기술규정 불필요한 장애 되지 않도록 보장합의 했다.	APEC-TELMRA 상호인증	1. 투명성과 기술협력강조 2. TBT위원회 개최

자료 : 한국 기 체결된 FTA의 TBT협정을 정리함.

〈표 4〉 중국의 기 체결된 FTA의 TBT규정 주요내용

FTA	표준	규제	적합성평가	기타내용
중-ASEAN	WTO/TBT 일치	WTO/TBT 일치	WTO/TBT 일치	TBT위원회 개최
중-칠레	WTO/TBT 일치	WTO/TBT 일치	협상 발효 후 6개월 내에 MRA의 실행가능성 검토	1. TBT위원회 개최 2. 기술표준과 3. 적합성평가절차에 관한 교류강화
중-파키스탄	WTO/TBT 일치	WTO/TBT 일치	WTO/TBT 일치	1. 양국 기술규제와 적합성평가절차의 정보교류 투명도 강화 2. 기술협력강화 3. TBT위원회 개최

FTA	표준	규제	적합성평가	기타내용
중-뉴질랜드	WTO/TBT 일치	WTO/TBT 일치	전자자기제품 및 부품의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증체결	TBT 위원회 개최
중-싱가포르	WTO/TBT 일치	WTO/TBT 일치	MRA가능성 협상	1. 충분한 정보교류 2. TBT위원회 개최 3. 행정권보유
중-페루	WTO/TBT 일치	WTO/TBT 일치	WTO/TBT 일치	1. 투명도 강화 2. 기술협력 강화 3. TBT위원회 개최
한-코스타리카	WTO/TBT 일치	WTO/TBT 일치	1. 적합성평가영역 합자협회의 협상예정 2. 각국의 평가기구 및 기타 상관 국제	TBT위원회 개최

자료 : 중국 기체결된 FTA의 TBT협정을 정리함.

(1) TBT 규정의 개황비교

〈표 3〉과 같이 한국은 현재 기 발효한 FTA로는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등 8개 있다. 한국이 체결한 8건의 FTA/TBT 규정 중 한-ASEAN FTA와 한-EFTA FTA의 경우 무역상 기술장벽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하는 조문을 도입하지 못했고, FTA협정문에서 기술장벽에 대해서는 WTO/TBT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만 규정했다. 한-칠레 FTA, 한-페루 FTA의 경우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해서는 WTO/TBT협정을 준수하기로만 규정했다. 나머지 4건 FTA TBT 부분에 각자의 중점이 강조되었다.

〈표 4〉를 보면 중국은 현재 기 발효한 FTA로는 중-CEPA, 중-ASEAN, 중-파키스탄, 중-칠레, 중-싱가포르, 중-페루, 중-ASIA-PACIFIC, 중-코스타리카 등 9개 있다. 중국이 체결한 9건의 FTA/TBT 규정 중-CEPA FTA와 중-ASIA-PACIFIC FTA의 경우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중-ASEAN FTA, 중-파키스탄FTA 및 중-페루 FTA의 경우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해서는 WTO/TBT협정을 준수하기로만 규정했다. 나머지 4건 FTA TBT 부분에 각자의 중점이 강조되었다.

(2) 기술표준 및 기술규정에 대한 비교

〈표 3〉과 〈표 4〉와 같이 한-중 양국의 기 체결된 TBT 규정 기술표준과 기술규정에 대해

서는 거의 비슷하게 WTO/TBT 규정에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술표준에 관련해서는 WTO/TBT 협정에 따라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양 당사국은 국제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규정 관련해서는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국내(혹은 회원국내) 이해 관계자(업체, 단체, 개인 등)는 물론 상대측 이해당사자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EU와 미국과 FTA 체결 시 기술규정에 대해서 추가규정이 들어가 있다. 한-EU FTA에서는 EU회원국 통일한 기술규정 적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정보제도 목적 외 강제적 라벨요건을 최소화 그리고 MADE IN EU 사용 불허하기로 추가조항이 들어가 있다. 한-미 FTA에서는 자동차와 관련 기술규정 불필요한 장애 되지 않도록 보장 합의하였다.

(3) 적합성평가절차의 비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 한-싱가포르 FTA, 한-인도 FTA 체결시 전기·전자분야에서 상호인증제도(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를 추진하기로 하고, 한-EU FTA, 한-미국 FTA 체결시 협정문에서 전기·전자분야에서 상호인증제도(MRA)를 도입했다. 상대국의 등록된 적합성평가기관에서 이수를 한 경우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한다고 규정하고, 적합성평가의 상호인정과 관련한 적합성평가기관의 등록, 이에 대한 검증 및 감독, 지정 정지 및 정지해지, 이의 제기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⁹⁾ 그중에서 한-미 FTA TBT규정에서 전기통신기기 분야에 있어서 APEC MRA 2단계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인정을 약속했고¹⁰⁾,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절차의 상호인정요청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 규정이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중국은 칠레, 싱가포르 FTA 체결시 상호인증제도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고, 뉴질랜드와 FTA 체결시 전기전자제품의 상호인증제도 체결했다. 이것은 중국에서 유일한 상호인증제도이다.

(4) 투명성과 협력의 비교

한-중 양국은 FTA 체결시 투명성에 대하여 거의 다 규정하고 있지만, 시기에 따라 투명성에 대한 강조하는 정도가 다르다. 한국의 경우 초기에 체결한 FTA 협정이 통보 혹은 문의

9) 최현경, 고준성. 2010. 표준과 경쟁우위-성장과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10) 한-미 FTA 협정문.

처 제공 등 중에서 한 가지만 강조해왔으나, 한-EU FTA 이후부터는 통보와 문의처 제공 등을 다 강조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중-뉴질랜드 FTA 이후부터 통보와 문의처 제공 등을 다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TBT 위원회 대해서는 양국 기 체결된 FTA 협정에서 상품교역과 관련하여 양국 간 발생할 수 있는 TBT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FTA 협정이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TBT 위원회를 다 설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EU FTA TBT 규정에서 위원회 대신 조정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TBT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작업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여기에는 비정부기관의 전문가나 이해당사자가 작업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V. 한·중 FTA 추진 시 TBT 분야의 협상전략

전술한 한-중 양국의 기체결한 FTA 협정 중 TBT규정에 관한 내용 비교를 살펴보면, 중국은 모든 FTA에 무역상 기술장벽 조항을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외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한·중 FTA의 효과적인 협상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앞장에서 한·중 양국이 기체결한 FTA TBT 규정의 비교 분석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진될 한·중 FTA TBT부문에 대비하여 TBT 협상전략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기술장벽에 대한 협상전략을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TBT 분야 협상전략 요약

분 야		한-중 FTA TBT 분야 협상전략
1	기술표준 및 규정	- 기술표준 및 규정 강화 - 배타적인 기술표준 철회 - 자동차 작업반 설치
2	적합성평가	- 수입품 추출 검사의 표본 비율 상향 조정 - 한국수출제품의 인증마크단일화 촉진 - 시험·인증기관 인력의 교육 및 양성협력
3	투명성	- TBT위원회 설치 - 다양한 의견수렴 기간 설치

1. 기술표준 및 규정의 협상전략

(1) 기술표준 및 기술규정의 강화

한국은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 이후 국제표준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활동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기술표준의 인식을 높아졌지만 그 당시의 국내기술의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시장환기술(시장換技术)’이라는 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기술이전이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중국 상무부의 《2005년 다국적 기업대 중국투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국적 기업 대 중국투자가 많았지만 중국기업의 실질적 기술수준이 기대만큼 높아지지 못 했다. 그 이후에 중국정부에서 기술표준의 인식이 높아졌으며, 자국의 기술수준의 높이에 힘쓰고 기술표준에 대한 제정도 지속적인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의 기술표준이 대부분은 외국 표준을 참조하거나 직접 채용해왔기 때문에 지금 실행하는 ISO/IEC의 국제표준의 제정에 대해서 중국의 참가율이 0.2% 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기술표준, 규정을 제정하는 목적중 하나는 바로 인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식품 일회용품 등 안전문제를 살펴보면 중국의 제조업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표준이 아직도 선진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닐 뿐아니라 기본적인 표준의 요구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생활 수준을 높아지면서 인체안전과 환경보호 인식이 더욱 커지면서 기술표준의 제정도 세분화되고 엄격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면 EU에서 새로운 《장난감안전규정》을 실시한 후 최근에 미국 CSPC에서 2011년 통관된 새 수정 장난감안전표준 F963-2011 규정이 투표를 통과하여, 2012년 6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중 FTA를 실시하면 값싼 중국산 장난감 등과 같은 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한국에서도 EU와 미국의 기술 표준을 참고하여 대 중국 제조업에 대한 기술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배타적인 기술표준 철회

배타적인 기술표준도 보호무역주의의 효율적인 활용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물론이고 한국수출기업에 강력한 장벽이 될 수 있다.

중국의 기술 표준화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각 협회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중국의 독자 표준이어서 국제 방식과 달라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이 방식에 맞추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또한 유사한 다른 나라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중국만의 표준을 고집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2004년 초 국제표준과 호환성이 없는 자체 무선 랜(LAN) 규격 WAPI(Wireless LAN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를 제정하였다. WAPI의 보급 확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독려로 중국 내 22개 IT업체들이 ‘WAPI 산업연맹’을 결성하고 있다. WAPI는 중국의 무선랜 암호화 표준으로, 중국정부가 새로운 WAPI 암호코드의 배포권한을 11개 중국 업체에 독점시킴으로써 외국 업체가 이 WAPI를 이용하려면 중국기업과의 라이선스 협약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중국의 기술 인허가제도에서 또 다른 문제는 각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달라 인허가가 전국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인허가 기간도 길어 IT업체와 같이 제품 수명주기가 짧은 산업의 경우 제품 출시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3) 자동차 작업반 설치

2012년 3월에 발표한 한중인 FTA 공동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징수한 관세율이 평균이 16.7%이다. 한-중 FTA 체결 후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한국 자동차가 세계에서 최대한 자동차시장에서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 대신 중국은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한 기술표준, 기술규정과 적합성평가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한-중 FTA 체결 시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미 FTA 같이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여 자동차 표준 및 기술규정 관련해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규정이 한중 양국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작업반은 자동차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그에 관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국과 그 영역의 이해당사자간의 협력 증대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 규제 문제를 다루는 다자간 포럼에서 한·중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동차 규제에 대한 우수규제관행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2. 적합성평가절차의 대응방안

(1) 수입품 추출 검사의 표본 비율 증가

한국정부가 2010년부터 모든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했다. 검사표본의 비율이 전 품목의 28%에서 30%¹¹⁾로 올렸고 감시할 항생제의 종류도 32개에서 44개까지 증가했다.

물론 한-중 FTA협상 시 농수축산물들이 민간품목으로 들어갈 예정이지만 중국대 한국 수출할 노동집약형을 띄고 있는 방직제품, 가구, 장난감등 제품이 관세부과율이 인하하므로 예전의 경쟁국가 일본과 미국보다 수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런 제품들이 화학유해 물질의 함유량에 대한 표준이 높으면서 추출 검사 시 표본 비율도 같이 높아져야 그만큼 검사효과가 있다.

(2) 한국제품의 인증마크단일화 촉진

한국에 KS마크 있는 것처럼 중국은 CCC 강제인증제도가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상호간의 인증마크의 인증과정을 간결화하고 인증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이 집행하는 데 편하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이 인증들은 상호인정에 아니라 아직은 기업의 수출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CCC통합형 적합성평가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방송통신기기 관련 망접속허가(NAL : Network Access License)나 무선통신수신(RTA :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과 같은 별도의 인증제도(정화하는 중국내 유통을 위한 허가 또는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과 상호인증제도에 체결하는 대신 쌍방 인증한 실험실과 실험수준을 맞춰서 한국제품이 중국시장진출 시 제품 구별 없이 양국에서 동일한 한 가지 인증마크만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기업이 이미 더 높은 기술표준으로 제정한 인증을 취득한 경우 인증마크의 인증을 감면하고 인증절차를 간소시켜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기업들이 중국시장 진출도 용이하고 중국기업들도 자신의 기술 표준을 세계수준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 양국의 시험·인증기관 인력의 교육 및 양성협력

본 논문에서 한-중 상호인증제도 찬성하지 않지만 한-중 양국 간은 상호인증제도 대한

11) 중국보도 자료 참고.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다. 한·중·일 3국이 2007년부터 환경보호표지의 상호인증을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개인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등의 화학물질의 종류와 계기의 분해방법 등에 대해 통일하고 상호인증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여기 한-중 상호인증제도의 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의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양국 표준화와 적합성평가, 그리고 시험·인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문제는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서 충분한 이론적 지식뿐 만 아니라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산학협동프로그램의 신설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학문을 이수한 적격자를 일정기간 전문교육 기간 또는 시험·인증관련 시험연구기관에서 일정기간 실습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하거나, 유사기관을 교육하거나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 선진국 수출제품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조치라 할 수 있다.

3. 투명성의 개선

한중양국의 FTA 협정 중 TBT의 투명성부분을 살펴보면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에 국내의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상대국도 비차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 규정 안에 대해 최소 60일의 가능할 경우 90일 이상까지의 기간을 부여한다고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다.

(1) TBT위원회 설치

한국은 기술장벽을 통보할 때 각 부처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해 통보 요청하면, 외교통상부에서는 WTO사무국에 통보를 하고,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으로 통보문을 전달한다. 반대로 타 회원국에서 TBT를 통보할 때는 WTO사무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¹²⁾ 중국은 기술장벽을 통보할 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국, 또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이 제안하고 상무부가 WTO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으로 통보문을 전달한다.

양국 간의 기술표준, 규정 등의 움직임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보의 고유와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12) 하태정 외.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양국 간 기술장벽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한중양국은 서로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더욱 효율적인 통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중 양국은 지금 새로운 기술규제를 통보할 때 우선 WTO/TBT 통보를 통해 해당국에 통보하기 때문에 정보교류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예상할 수 있다.
- 나) 중국 지역통보자문센터와 협력적인 교류를 촉진해야 한다.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여 각 성 단위로 TBT 통보자문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중국 각 지역과 한국무역교역량과 교역품목이 달라서 TBT통보에서 서로 필요한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다) 통보문 작성 시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세히 서술하도록 해야 한다. 통보문에서 담고 있는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상대국에서 잘못된 이해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전에 이미 통보된 기술규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2) 다양한 의견수렴 기간 설치

한중양국은 협업적인 기술규제 통보망을 설립하고 새로운 기술규제의 대응시간을 규제의 산업별로 다양화하게 해야 한다. 한중양국의 FTA 협정 중 TBT의 투명성부분을 살펴보면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국내의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상대국도 비차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고 상대국에 통보된 기술규정 안에 대해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표준원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만 해도 통보율이 26%밖에 안 된다. 중국의 경우 인터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그린 댐 설치의무화는 2009년 5월에 발표했지만 2009년 6월 무기한 연기에 대해서 WTO/TBT에서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짧은 의견 수렴기간은 다른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무역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 의견 수렴기간 동안에는 상대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짧아질 경우, 통보문의 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는 상대국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양국 간에 의견의 차가 커지게 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될 경우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 특히 제조업 경우 새로운 제품 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중 양국의 FTA 체결시 필요한 기술장벽 분야에서 한국 및 중국의 기체결된 FTA TBT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중 FTA 체결시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WTO/TBT 통보를 많이 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구제 수단을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WTO의 관련 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조항이나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협상과정에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협력강화, 적합성 평가 결과 수용 메커니즘에 대한 상호 인식, WTO권고 적용 등을 상세히 명시해 온 반면, 중국은 대체로 원칙을 규정하는데 머무르고 있어, 모든 FTA에 무역상 기술장벽 조항을 포함하거나 이와 관련한 대외협력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중 FTA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된 농산품에 대해서 민감 항목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관세율이 대폭 인하되는데 대비하여 중국산에 대한 기술표준, 기술규정 그리고 적합성 평가절차가 더욱 엄격하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양국 쌍방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증제도는 기업의 수출 특히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한중양국의 FTA 협정 중 TBT의 투명성부분에 살펴보면 투명성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여기에 상기 기술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중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은 대중국 시장진입 철폐·완화를 한중FTA의 핵심 목표로 삼을 수 밖에 없으므로 한국은 각종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무역 및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장치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산 농수축산물과 일용화학제품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표준, 규정 그리고 중국 수입품 추출 검사의 표본 비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나 양국간 입장 차이는 중국측의 제도 및 법률적 미비가 원인이므로 한국 정부와 업계는 동 사안에 대해 원칙을 가지고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¹³⁾

둘째, 지금 검토 중인 한-중 상호인증을 대비하기 위한 양국의 시험·인증기관 인력의 교육 및 양성협력 촉진도 필요할 것이다. 한국 수출품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기술표준 철회,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산제품 인증제도 단일화 혹은 인증항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의 개선하기 위해 TBT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규제 제·개정할 경우에 상대국에 산업별로 충분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국 수출 및 중국 현지경영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는 TBT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여 중국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13) 정환우, 2012, 참조.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 김영훈. 2010. 중국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전파방송통신저널. pp. 28-24.
- 김인지. 2012. 한중 FTA 추진시 기술장벽 부문의 협상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金昌魯. 2006. 貿易上 技術壁壘으로서의 標準에 對한 中小企業의 認識提高에 對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 레이레이. 2008. 국제무역장벽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 박주근. 2006. WTO무역상 기술 장벽협정과 원활화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산업연구원. 2010. 표준과 경쟁우위 - 성장과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 삼성경제연구소. 2011. 한중 FTA 의의와 주요쟁점.
- 孫振傑. 2009. 外國의 技術 障壁이 中國 무역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 정환우. 2012. 한중 FTA 비관세장벽 분야 쟁점과 시사점. ISSN 2093-3118. 6월. 국제무역연구원. 한국무역협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최근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및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 한 - 칠레 FTA 7년의 평가.
- 盛國勇. 2009. 技術性貿易壁壘對中國農產品出口貿易的影響及對策分析. 석사학위논문. 華中農業大學.
- 章志健. 2009. 技術性貿易壁壘對國際貿易的影響理論與實證研究. 박사학위논문. 武漢理工大學.
- Mohini Datt, Bernard Hoekman, Mariem Malouche, 2011. "Taking Stock of Trade Protectionism Since 2008", World Bank.
- 국제인증정보시스템(<http://cic.ktl.re.kr/index.action>)
- 국회도서관(www.nanet.go.kr)
-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 무역위원회(www.ktc.go.kr)
-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

新华网(www.xinhuanet.com)
FTA 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외교통상부(www.mofat.go.kr)
중국 국가 통계국(www.stats.gov.cn)
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http://www.ccpit.org>)
중국 무역구제 사이트(www.cacs.gov.cn)
중국 상무부(www.mofcom.gov.cn)
中国自由贸易服务网(<http://fta.mofcom.gov.cn>)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중앙 인민 정부(www.gov.cn)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TBT 信息网(<http://www.tbinfo.org.cn/cn>)
TBT 통합정보포털(www.knowtbt.kr)

Negotiation Strategy for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Korea-China FTA

Kim, Seong-Suhn* · Jin, Renzhi**

ABSTRACT

China is of the most frequently using notifications country in the world, it suppressed the foreign countries developm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measures while using Technical Barriers to Trade frequently as a mean to protect some subordinate industries of it's own country. Because of the existing of the concrete terms and operations, there are still need more accurately identification and improvement in the negotiation process to deal with the problems. So then, although after the contract of FTA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e still can see that using the arbitrary of trade remedy to protect the local industry.

In particular, passive attitude and some issues has been shows on the provision of technical barriers on all of the China FTA.

Natural agricultural products as the most topical issue will get into the sensitive article, but, as the sharp falling of tariff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testing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should be more strictly with the products of made in China. In the respect of Chinese products, In order to minimize the impact on the South Korea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seafood and daily chemical products, technical regulations, standards and the rate of sampling inspection should be improved. And in order to provide against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even it is still in negotiation, the cooperation of two countries' certificate authority is necessary. It include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workforce in these testing & certification authorities.

In the respect of South Korea export products, China government should withdrew the exclusive technical standards. Two countries should operate work group in the auto industry, in which ensure that standards are not prepared, adopted or applied with a

* Professor, Dept. of Int'l Trade, Dankook University

** MA Graduate, Dept of Int'l Trade,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view to, or with the effect of, creating unnecessary obstacles to automobile trade. And the Korea products' certification system should minimize and simplified.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s others countries operate the Korea-China TBT Committee and give different adaptation period with different industry.

Key Words : FTA,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 Korea, China